

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인 자격에 관한 안내

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다.

1. 법적 근거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
- 나. 「행정사법」 제2조, 제3조
- 다. 「건축사법」 제19조
- 라. 「변호사법」 제3조

2. 대리인 자격

- 가. 행정사사무소(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제출 등)
 - 나. 건축사사무소(건축사 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 제출 등)
 - 다. 법률사무소(변호사 사무소개업 증빙서류 제출 등)
 - 라. 수허가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
(관계 입증서류 제출 등)
- ※ 공통사항 : 위임장 제출

3. 접수 제한

- 가. 수허가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경우
- 나.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다.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※ 4월 1일부터 시행(제도기간 1개월)